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채정 협의(3급, 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증원과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직 증원 및 기능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94명 ⇒ 2,792명 (감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9명 ⇒ 1,437명 (감 2명)

- 감 2명 : 일반직 +5명, 기능직 △7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없음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기능직 공무원

구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260명	〈신설〉	5%이내	13%이내	19%이내	32%이내	31%이내
조정	253명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내
증감	△7명	+1%	+1%	+3%	변동없음	변동없음	△5%

○ 별정직 공무원

구분	총정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행	21명	5%이내	20%이내	48%이내	15%이내	10%이내	2%이내
조정	21명	5%이내	24%이내	44%이내	15%이내	10%이내	2%이내
증감	변동없음	변동없음	+4%	△4%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③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1,065명 ⇒ 1,070명 (증5명)

- 3급 증 1명(8명⇒ 9명) ※ 본청3급 +1 (7명⇒8명)

- 5급이하 증 4명(994명⇒998명)

○ 별정직 : 총정원변동없음⇒5급+1명(4명⇒5명),6급△1명(10명⇒9명)

○ 기능직 : 260명⇒253명(△7명)

○ 연구직 : 총정원변동없음⇒연구관+1명(21⇒22명),연구사△1명
(117명⇒116명)

※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한시직급 3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관리청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보강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직 증원, 기능직 공무원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개정조례안 개정내용 검토결과

□ 정원 총수 2명 감소는

- 정원 총수 2,794명에서 2,792명으로 집행기관만 총2명을 감소한 것으로

- 일반직 공무원 +5명,

- 기능직 공무원 △7명

《총정원 변동내역》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 공무원	기능직
개정후	2,792	1	1,070	21	138	24	1,243	42	253
개정전	2,794	1	1,065	21	138	24	1,243	42	260
증감	△2	-	5	-	-	-	-	-	△7

《기능직공무원 정원변동내역》

구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기준	253명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내
개정후 예상인원	253명	2명	15명	41명	48명	81명	66명
개정전	260명	0	13명	33명	49명	83명	82명
증감	△7명	2	2	8	△1	△2	△16

※ 비율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예상인원으로, 개정후 예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서별·직급별 증가내용은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명(한시직급 3급 +1명, 일반직+1명)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한시직급과 기능직 대체인원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2명(일반직 2명)
 - 국토관리청 업무이관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설치
- 경제통상국 1명(국제관계자문 대사 1명)
 - 도정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관계자문대사 신설

□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상향 조정내용은

- 전문직종 우대를 위한 별정직, 연구직 직급 상향
 - 연구관 +1명(연구사 △1명) : 명품 쌀 생산기반 확충
 - 별정5급상당 +1명(6급상당 △1명) : 도정홍보역량 강화

다.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한시직급 설치, 국토관리청 업무이관, 전문직종 우대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양양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총수의 증가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이 감소한 2,792명이며, 증감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5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공무원 7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정원총수 2명 감소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009년도 인건비 예산액 1,726억원 보다 2억 2,213만원이 증가한 1,729억원 정도 이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된 총액인건비 1,772억원의 범위내에서 있음.

이는 충청북도의 당면한 정책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과 지방으로 이관되는 국토 관리청 이관업무를 수행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직 충원과 기능직·별정직·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비율 상향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치로 판단됨.

다만, 이번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5명이 증원 되는 반면 기능직 7명은 감원됨에 '09년도에는 일반직은 19명 증원, 기능직은 10명 감원²⁾되어 직종별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양양으로 추진하는 직급 비율상향에 따른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인 방침이 마련되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 09. 9. 1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반직 +14명, 기능직 △3명)
09. 12.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반직 +5명, 기능직 △7명)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분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792(Δ2)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70	-			
2~3급	1		1		
3급	9(+1)	8(+1)		1	
3~4급	1	1			
4급	61	44	7	4	6
5급이하소계	998(+4)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20			
연 구 직 계	138	-			
연 구 관	22			19	3
연 구 사	116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243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233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 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53(Δ7)	-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비 용 추 계 서

□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2,794명 ⇒ 2,792명 (감2명)

○ 일반직 증 5명, 기능직 △ 7명

□ 추가 소요 비용 : 222,130,949원

(단위:명,원)

구 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22,130,949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인건비	179,107,589	○ 일반직, 별정직
- 기본급	125,366,400	- 3급 : 20호봉 기준
- 수 당	16,303,560	- 5급 : 18호봉 기준
- 정액급식비	-3,120,000	- 6급 : 18호봉 기준
- 교통보조비	120,000	- 7급 : 15호봉 기준
- 명절휴가비	12,536,640	○ 연구직
- 가계지원비	20,936,189	- 연구관 : 15호봉 기준
- 연가보상비	6,964,800	- 연구사 : 16호봉 기준
○ 물건비	13,080,000	○ 기능직
- 직급보조비	14,280,000	- 5급 : 18호봉 기준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000	- 6급 : 18호봉 기준
○ 이전경비	29,943,360	- 7급 : 15호봉 기준
- 성과상여금	13,581,360	- 8급 : 12호봉 기준
- 연금부담금	11,849,000	- 9급 : 10호봉 기준
- 국민건강보험금	4,513,000	- 10급 : 9급 10호봉 기준